

의안번호	2203866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4. 11. 12.
추계번호	24D3689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폐지하고,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1억원 등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5년 동안 총 622억 6,100만원(연평균 124억 5,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1년

(단위: 백만원)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합계	연평균
공무원 증원 (212명)에 따른 인건비	6,532	11,146	11,353	11,564	11,779	5,988	58,362	11,672
기초자치단체장 1인의 인건비	79	151	154	157	160	81	782	156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489	573	579	585	591	299	3,117	623
합 계	7,100	11,870	12,086	12,306	12,530	6,368	62,261	12,451

주: 1. 증원되는 공무원 212명은 7급 11호봉으로 가정

2.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는 증원되는 41명의 시·군의회의원의 의정비에서 감소하는 22명의 도의회의원의 의정비를 뺀 값임

3. 본 추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증원인원 등을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및 수당 등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설치 등)	-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설치함 ¹⁾ → 제주특별자치도에 현행 행정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의무규정

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설치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²⁾에 현행 행정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시 명칭	관할구역
동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현행: 2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정안: 3개 기초자치단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 법인격 없는 하부행정기관	인구, 세수, 경제기반(육아, 교육, 복지, 의료, 문화 시설 등)이 비슷한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 2)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일광역 행정체제이며,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는 의회를 두고 있지 않음

및 기초자치단체장 1인의 인건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추가재정
소요로 추계함

-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³⁾에
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고, 지
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고 있음⁴⁾

- 행정시에는 행정시장을 두며,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도지사가 임명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3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 시, 동제주시는 (현)제주시청 청사, 서제주시는 (현)제주
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서귀포시는 (현)서귀포시청 청사를 활용할 예정
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리모델링
비용 추정이 어려우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시장·군수 선출에 필요한 투표비용, 지방세시스템 등 정보화 시스
템의 정비 비용, 명칭 변경에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행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⁵⁾, 현시점에서 시장·군수 선출 비용, 정보화 시스템
정비 규모, 표지판 등의 명칭 변경 비용 등 다양한 유형의 행정비용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3)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③ (생략)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략)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
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4) 참고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제주도의 시·군은 4개(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
군)였으며, 2024년 2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
구용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추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시·군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5) 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는 현행법 제10조의2에 따라 가능하므로, 주민투표 실시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 212명과 시·군의회의원 41명(감소하는 도의회의원 2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기존의 제주시·서귀포시의 인력이 신설되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채용 인력의 수 및 직급 현황을 현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이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 212명은 일반직 7급 11호봉으로 가정
 - 현재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직급별 정원 중 7급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증원되는 공무원의 직급도 7급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⁶⁾
 - 11호봉으로 가정한 사유는 9급 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⁷⁾이 10~13년 이상 근무하면 7급 11호봉이 되며, 평균 근무기간(20~30년)을 감안하여 중간값으로 설정
- 증원되는 시·군의회의원 41명의 의정비에서 감소하는 도의회의원 22명의 의정비를 차감하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를 추계
-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⁸⁾에서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5급의 정책연구위원을 최대 21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1월 기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음

6) 7급 이하의 경우, 제주시 정원 1,720명 중 1,251명(72.7%), 서귀포시 정원 1,210명 중 853명(70.5%)이며, 7급 정원은 제주시 532명(30.95%), 서귀포시 357명(29.5%)로 전체 직급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

7) 기초지방자치단체는 7급 공채가 거의 없음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적용⁹⁾10)
-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¹¹⁾을 적용
- 제정안 부칙¹²⁾에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폐지하고,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설치할 경우 증원되는 공무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1인의 인건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임

가. 공무원 212명의 인건비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 212명은 일반직 7급 11호봉으로 가정하고,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9)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2024.10.)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	1.9%	1.9%	1.9%	1.9%	1.9%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공무원 인건비 기관부담금요율 전망(2024.10)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기관부담금	13.11%	13.21%	13.31%	13.40%	13.49%	13.58%	13.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4.10)

(단위: 천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당 자산취득비	4,907	5,010	5,120	5,228	5,337	5,4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2) 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이하 “신설시”라 한다)의 시장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한다.

② 신설시의 의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한다.

7급 11호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2024년 연간 보수는 [표 2]와 같음

-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 월 70,000원) 반영
-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반영¹³⁾
- 연가보상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
- 증원되는 공무원 212명은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7급 11호봉 일반직 지방공무원 보수: 2024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일반직 7급 지방공무원	36,397	840	3,840	41,077

자료: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증원되는 212명의 보수: 2026~2031년

구분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7급 11호봉 일반직 공무원 보수(A, 천원)	21,326	43,463	44,289	45,131	45,988	23,431
공무원의 수(B, 명)	212	212	212	212	212	212
합 계 (C=A×B, 백만원)	4,521	9,214	9,389	9,567	9,749	4,9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관부담금 효율을 [표 3]에 따른 212명의 보수에 곱하여 산출

[표 4] 7급 11호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관부담금: 2026~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기관부담금	597	1,226	1,258	1,290	1,323	6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정원¹⁴⁾이 2024년 11월 기준

13) 정액급식비: 140,000원, 직급보조비: 180,000원

14) 의회사무처 제외

6,352명이며, 기본경비는 211억 6,930만원으로 1인당 333만원이므로,
1인당 기본경비에 증원되는 공무원 수를 곱하여 산출

- 추계기간 동안 기본경비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5] 증원되는 212명의 기본경비: 2026~2031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1인당 기본경비 (A, 천원)	1,660	3,330	3,330	3,330	3,330	1,660
증원되는 공무원 수(B, 명)	212	212	212	212	212	212
합계 (C=A×B, 백만원)	352	706	706	706	706	3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공무원 212명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2026년
에 10억 6,212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적용하였을 때, 1인당
2026년에 501만원이 소요되며, 증원 인원 212명에 1인당 자산취득비를 곱
하여 산출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계기간(2026.7.~2031.6.) 중 212명의 7급
11호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증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
는 향후 5년간 총 583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212명의 공무원(7급 11호봉)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합 계
인건비(a)	5,118	10,440	10,647	10,858	11,073	5,636	53,772
기본경비(b)	352	706	706	706	706	352	3,528
자산취득비(c)	1,062	0	0	0	0	0	1,062
합 계(A=a+b+c)	6,532	11,146	11,353	11,564	11,779	5,988	58,3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기초자치단체장 1인의 인건비

□ 제정안에 따라 현재 제주시장·서귀포시장 2명에서 기초자치단체장 3명으로 개편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 1인의 인건비를 추가재정소요로 추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¹⁵⁾에 따르면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의 연봉은 113,818천원(2024년 기준)임
 - － 현재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은 2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며, 부시장은 3급 일반직 공무원임

[표 7] 기초자치단체장 1인의 보수: 2024년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기초자치단체장	113,818	9,960	7,800	1,680	480	123,778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에 따라 월 65만원으로 가정
자료: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관부담금 효율을 [표 8]에 따른 연도별 보수에 곱하여 산출

[표 8] 기초자치단체장 1인의 보수 및 기관부담금: 2026~2031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보수(A)	64,263	130,968	133,456	135,992	138,576	70,604
기관부담금(B)	8,489	17,432	17,883	18,345	18,819	9,510
합계(C=A+B)	72,752	148,400	151,340	154,337	157,395	80,1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5)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 기본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정원이 2024년 11월 기준 6,352명이며, 기본경비는 211억 6,930만원으로 1인당 333만원을 적용
 - 추계기간 동안 기본경비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9] 기초자치단체장 1인의 기본경비: 2026~2031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기본경비	1,660	3,330	3,330	3,330	3,330	1,6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에 501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적용하였을 때, 1인당 2026년에 501만원이 소요됨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계기간(2026.7.~2031.6.) 중 기초자치단체장 1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7억 8,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기초자치단체장 1인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1년

구 분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합 계
인건비(a, 천원)	72,752	148,400	151,340	154,337	157,395	80,115	764,339
기본경비(b, 천원)	1,660	3,330	3,330	3,330	3,330	1,660	16,640
자산취득비(c, 천원)	5,010	0	0	0	0	0	5,010
합 계 (A=a+b+c, 백만원)	79	151	154	157	160	81	7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 따르면 제정안 시행시 도의회의원은 22명이 감소하

고, 시·군의회의원은 41명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추계함

① 도의회의원 의정비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은 45명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연구·용역¹⁶⁾에 따르면 제정안 시행시 도의회의원 2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비는 도의회의원 1인당 의정비에 22명을 곱하여 산출
- 도의회의원의 의정비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가 포함되며, 도의회의원 1인에 따른 의정비는 [표 11]과 같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¹⁷⁾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정활동비는 2024년 기준 연간 2,40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4,190만원임
 - 의정활동비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대비 기본경비 비율(25.8%)¹⁸⁾을 적용하여 산출
 -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관부담금은 월정수당에 요율¹⁹⁾을 곱하여 산정
 - 도의원의 연령을 모두 60세 미만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을 추계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16) 제정안 시행시 도의회의원 23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17)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2023.12.14. 개정)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18)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액 중 인력운영비가 12%, 기본경비등이 3.1%로 기본경비등의 비율은 인력운영비의 25.8%임

19)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 포함)을 합쳐 2026년 8.567%, 2027년 8.63%, 2028년 8.694%, 2029년 8.786%, 2030년 8.88%, 2031년 8.97%

[표 11] 도의회의원 1인의 인건비 추정: 2026~2031년

(단위: 천원)

구분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의정활동비	12,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
월정수당	21,754	44,334	45,176	46,034	46,909	23,900
기관부담금	1,864	3,826	3,928	4,045	4,166	2,144
기본경비	8,708	17,630	17,847	18,069	18,295	9,262
합 계	44,326	89,790	90,951	92,148	93,370	47,3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2] 도의회의원 22인의 인건비 추정: 2026~2031년

구분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의정비 (A, 천원)	44,326	89,790	90,951	92,148	93,370	47,306
도의회의원 수 (B, 명)	22	22	22	22	22	22
합 계 (C=A×B, 백만원)	975	1,975	2,001	2,027	2,054	1,0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② 시·군의회의원 의정비

- 제정안 시행시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의회의원은 41명이며, 이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산출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의 연간 월정수당은 2,778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임
 - 의정활동비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대비 기본경비 비율(25.8%)을 적용하여 산출
 - 시·군의회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관부담금은 월정수당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
 - 시·군의회의원의 연령을 모두 60세 미만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을 추계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에 1인당 501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²⁰⁾

[표 13] 시·군의회의원 1인의 인건비 추정: 2026~2031년

(단위: 천원)

구분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의정활동비	9,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
월정수당	14,423	29,394	29,953	30,522	31,102	15,846
기관부담금	1,236	2,537	2,604	2,682	2,762	1,421
기본경비	6,043	12,228	12,372	12,519	12,668	6,410
자산취득비	5,010	0	0	0	0	0
합 계	35,712	62,158	62,928	63,722	64,532	32,6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4] 시·군의회의원 41인의 인건비 추정: 2026~2031년

구분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의정비(A, 천원)	35,712	62,158	62,928	63,722	64,532	32,678
시·군의회의원 수(B, 명)	41	41	41	41	41	41
합 계 (C=A×B, 백만원)	1,464	2,548	2,580	2,612	2,645	1,3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③ 도의회의원 감소 및 시·군의회의원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증원되는 시·군의회의원 41명의 의정비에서 감소하는 도의회의원 22명의 의정비를 차감한 결과, 추계기간 동안 31억 1,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5]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합계
시·군의회의원 41명 의정비(A)	1,464	2,548	2,580	2,612	2,645	1,339	13,190
도의회의원 22명 의정비(B)	△975	△1,975	△2,001	△2,027	△2,054	△1,040	△10,073
합 계 (C=A-B)	489	573	579	585	591	299	3,1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적용하였을 때, 1인당 2026년에 501만원이 소요됨

3.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폐지하고,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1억원 등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5년 동안 총 622억 6,100만원(연평균 124억 5,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1년

(단위: 백만원)

	2026.7.~	2027	2028	2029	2030	~2031.6.	합계	연평균
공무원 증원 (212명)에 따른 인건비	6,532	11,146	11,353	11,564	11,779	5,988	58,362	11,672
기초자치단체장 1인의 인건비	79	151	154	157	160	81	782	156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489	573	579	585	591	299	3,117	623
합 계	7,100	11,870	12,086	12,306	12,530	6,368	62,261	12,451

주: 1. 증원되는 공무원 212명은 7급 11호봉으로 가정

2.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는 증원되는 41명의 시·군의회의원의 의정비에서 감소하는 22명의 도의회의원의 의정비를 뺀 값임

3. 본 추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증원인원 등을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및 수당 등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증원 인원 등을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및 수당 등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